

漢字의 表意性과 表音性에 대하여

— 日本의 教育基本法과 學習指導要領의 改定에 따른 漢字 취급에 관한 高찰 —

中田 雅敏 (八洲学園大學教授)

1. 成文法規主義에 기초한 教育體制

일본에서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教育基本法」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다. 또 교육을 행정으로 통괄하는 법으로는 「地方教育行政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法律」이 있다. 전자에는 교육의 근간과 교육의 목표, 교육이 지향할 마땅한 이상이 명기되어 있다. 후자에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일본 전국 어디라도 교육수준을 동질하게 유지하도록 행정과 교육조직에 의해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률에 의해 1945년 이후, 60여 년 간에 걸쳐 일본의 교육이 행해지고, 전후의 일본 부흥도 이루어진 것이다. 또 실제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전반에 관해서는 「學校教育法」이 담당하고 있다. 戰後 일본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 법률은 PHQ점령하의 연합국지시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즉 成文法規主義에 기초한 법률주의 교육행정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전쟁 전의 교육행정은 「地方學事通則」이라든지 「市町村義務教育費國庫負擔法」 등의 교육재정에 관한 약간의 법규는 있었지만, 그 나머지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지시는 「勅令」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칙령주의’였다. 전후는 國會가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 되어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행정이 행해지고, 교육행정도 이 법률주의에 의거하게 되었다. 교육행정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공교육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그 고유의 교육권의 受託을 받아,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하여 행해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의를 교육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재 보는 바와 같이 가치관의 붕괴·분열에 의해 국민들 사이에 교육이념과 목적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일반적 교육의사를 적법한 절차적 보장에 의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의회제민주주의 아래에서는 국회뿐이고, 그곳에서 제정된 법률이야말로 국민의 일반적 교육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교육행정기관이 국민의 교육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이것 외에 이것을 대신할 곳은 없다. (1964년2월19일 仙臺高裁判決)

이것이 전후 60년간의 일본교육행정의 기본적인 사고가 되어, ‘가치관의 변화’와 ‘국민의 일반적 교육의사’에 좇아 이극고 ‘한문교육’은 매년 축소되어 ‘한자교육’과 ‘한자용법교육’이 되었고, ‘한문교육’과 ‘한문사상교육’은 오늘날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學校教育法實施規則」에 따라 직무내용이나 학교 제도와 운영의 기본을 정한다. 이것 외에 매년 교육내용 등에 변화와 개정이 있으면 ‘법개정’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교수내용이 들어 있는 「學習指導要領」은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이것은 「學校教育法實施規則」 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文部省告示」 라고 하는 법적 절차로 행해진다.

지방공공단체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條例와 規則을 제정할 수 있지만, 「헌법」 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의 세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정된다. 이것들은 「告示」, 「訓令」, 「通達」 에 의해 지방공공단체에 전해진다. 「告示」 란 상급의 공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행정조치로서, 행정처분을 통지하는 것이다. 「訓令」 이란 상급의 행정기관이 하급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직무운용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通達」 이란 권한을 갖는 자가 과약사무에 대하여 일정의 사실이나 행정처분과 의견 등을 소관의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시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문서는 戰前에는 ‘漢文訓讀體의 문장’으로 작성되었다. 전후에도 그 문체는 이어졌는데, 1965년 무렵부터 통상의 口語體的인 문장으로 변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문교육의 시간 수는 감소하였고, 교재 등도 격감되었다.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학습지도요령」 은 크게 10년마다 개정되는데, 매년 일부분씩 개정된다. 한문교육은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古典講讀’ 가운데 포함되어, 일주일에 2시간 배정되고 있다.

2. 新教育基本法과 漢字教育

2006년2월22일에 「教育基本法」 이 개정되었다. 戰後 60년을 경과한 후의 개정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전후 부흥을 위해 지향해 왔던 교육이념이 달성되어, 이후의 일본사회를 지탱하는 교육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이라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이었다. 다음은 그것의 前文이다.

우리 일본국민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구축해 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가를 다시 새롭게 발전 시킴과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향상에 공헌함을 기약한다. 우리들은 이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진리와 정의를 회구하며 공공의 정신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여기에, 우리들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할 교육을 확립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2006년2월22일, 개정교육기본법)

이러한 이상과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교육기본법」 에 있어서는 금후의 세계정세와 일본의 장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한자교육’ 및 ‘한문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기본법」 이 제시하고 있는 일본 장래의 모습은 다음의 「학습지도요령」 의 개정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21세기는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이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으로서 비약적으로 중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른바 知識基盤社會가 된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의 경향은 아이디어 등의 지식과 인재를 둘러싼 국제경쟁을 가속시키는 한편으로 다른 문화와 문명과의 공존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학력, 풍부한 마음가짐, 건강한 신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삶을 해쳐나가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 (學習指導要領改正趣旨前文)

이러한 방침 하에서 만들어진 학습지도요령으로 첨가된 교과목이 ‘소학교 2학년부서의 영어교육’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에서는 ‘중학교부서의 영어교육’이었던 것이 소학교부터 실시되게 되었다. 이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과의 경합이라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고,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 세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 된다. 결국, 한문교육은 크게 후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國語科의 지도방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국어과에 있어서는 그 과제를 바탕으로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하여 언어교육으로서의 입장을 한 층 더 중시하고,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어를 중시하는 태도를 육성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각 과목의 기준이 되는 국어 능력을 몸에 배게 하여,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를 향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내용의 개선을 도모한다.

②언어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 상호간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하고 언어로 서로 주고받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문화에 접하여 감성을 기르는 것을 중시한다.

③현행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영역 구성은 유지하면서, 기본적·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실생활의 여러 장에서의 언어활동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타낸다.

④어린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습의 계통성을 중시하고, 학교단계, 학년단계마다 구체적으로 배양할 능력의 육성을 지향하여, 중점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능력의 기초를, 중학교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국어능력의 기초를,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국어능력의 기초를 각각 확실하게 육성한다.

⑤ 한자 지도에 관해서는 실생활과 타 교과 등의 학습에서의 사용과 독서활동의 충실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확실한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충실히 한다. (學習指導要領國語科改正의趣旨)

이상과 같이 규정되었고, 나아가 ‘경어 지도’, ‘독서 지도’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기초적인 국어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이것을 ‘주고 받는 능력’으로 하고, ‘대화, 기록, 보고, 요약, 설명, 감상’이라는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확실하게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을 중점항목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학습지도요령에서 그 특별히 강조되어 설정된 것이 ‘언어문화와 국어의 특질에 관한 지도요령’이다.

이야기와 詩歌 등을 읽거나 변환하여 쓰거나 연기하는 것을 통하여, 언어문화에 친숙해 지는 태도를 육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 인식과 사고력 및 주고받는 능력 등에서 실행하는 언어의 역할과 상대에 따른 언어 사용, 방언 등 언어의 다양한 쓰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더불어서 발음, 문자, 표기, 어휘, 문, 문장의 구성, 말투 등에 대해서는 실제의 언어활동에서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영역의 내용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필요에 응하여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國語科에 관한 개선의 구체적 사항)

3. 新學習指導要領國語科

이번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국어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계승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 지금부터 천 년 전에 ‘唐風文化와 漢詩’를 중시하였던 律令制國家에서 귀족사회에서 역사가 크게 전환하였을 때, 그 귀족사회를 이끈 것이 ‘國風文化와 和歌’였었고, ‘漢字使用文’에서 ‘히라가나(平假名)使用文’에의 대전환이었다. 이번의 개

정은 ‘영어사용생활중시’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재검토’에 의한 새로운 국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정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한자’와 ‘한문교육’은 대폭적으로 삭제되었다. 국어과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주안점은,

①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일상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와 경우에 따른 말 쓰임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시한다. 말의 지도에 관해서는 계통적으로 지도함과 더불어 실제로 문장을 쓰거나 읽거나 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의 개선을 도모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전달의 방법으로서의 언어활동과 말씨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는 前文의 主旨는 독서지도에 의해 도모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의 활자기피와 독서활동이 쇠퇴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서적의 독과에 의한 문화 계승을 우려한 지도 목표이다.

②독서의 지도에 대해서는 독서에 친숙하고 어떤 관점과 느낌, 생각을 넓히고 깊게 하기 위한 독서활동을 내용으로 정한다. 교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계승되어온 언어문화에 친숙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읽혀져 온 고전과 근대 이후의 작품 등을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응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에서 보이는 ‘이야기와 詩歌 등을 읽거나 변환하여 쓰거나 연기한다’고 하는 것과 지도목표인 독서지도와 부합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도 요번의 학습지도개정의 주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지도’와 ‘한문교육’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①언어문화로서의 고전에 친숙한 태도를 육성하는 지도에 관해서는 쉬운 고문이나 한시, 한문을 대상으로 음독과 암송을 중시한다.

②한자지도에 관해서는 일상생활과 他教科 등의 학습에서의 사용이나 독서활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고학년배당되어 있는 한자나 학년별 한자배당표 이외의 상용한자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후리가나(振り仮名; 한자에 그것을 읽은 음을 가나로 단 것)를 사용하는 등, 아동이 읽은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확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여, 실제의 문장과 표기 가운데서 되풀이하여 학습시키는 등, 아동의 습득 실태에 따른 지도를 충실히 한다.

4. 漢字의 表意性和 表音性

이와 같이 한자의 音讀에 중점이 두어져, 訓讀 또는 ‘한자가 갖는 표의성’에 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표음성’과 ‘한자사용’에 대한 지시가 주된 목표이다. 즉,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교육기본법에서 주장하면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고전」으로서 일주일에 2시간만의 배당으로, 그 중에서 漢詩와 漢文에 관해서는 ‘음독과 암송’으로 지도한 것이 된다. 이것으로는 올바른 한자교육은 되지 못할 것이다. 한자를 단지 ‘표음문자’로서만 취급하고, ‘표의성’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자문화권으로 떨어져 영어권문화에 이행한다고 하는 「신교육기본법」 개정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불교의 敎典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葬儀나 法要 때에 승려가 독송하는 교전은 ‘표음’이다.

즉 ‘경전 한자의 음’을 발음하는 것이다. 眞言도 梵字로 기술되어 ‘표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한문은 訓點을 달아 음독하고 있다. 즉 이것도 표음이고 한 글자씩 혹은 한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표의이다. 표음과 표의를 동시에 이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이른바 ‘訓點의 オトコ點’이다. 요번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여태까지의 교육지도는 없다. 즉 ‘읽는다’는 것은 ‘음독’을 의미하며, 한문·한시의 의미와 해독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히 오랜 시절 승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佛經은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의 해석과 강석을 못하는 승려도 있다. 그 중에는 불경의 前文과 後文만을 읽고, 중간의 본문을 생략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본당의 보이지 않는 곳에 확정기를 설치하고 녹음으로 대신하고 있는 절도 있다. 후계자 부족으로 그러한지 아니면 경문을 읽지도 못하는 승려가 증가한 것인지, 가짜 중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또 근래에는 컴퓨터로 문장을 쓰기 때문에 한자의 변환 실수도 자주 있는데, 이것도 ‘표의문자’로서의 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자에 관한 습득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학년배당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소학교의 한자학습에서 1학년에서는 80자, 2학년에서는 160자,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각각 200자, 5학년에서는 185자, 6학년에서는 181자, 6년간 전부 1006자를 배우게 된다. 이것 이외의 상용한자에 관해서는 ‘필요에 응하여 후리가나를 달거나 하여 읽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한다’고 하듯이, 한자 ‘읽기’에 중심이 두어져 있다. 중학교에서의 ‘한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소학교학습지도요령의 학년별 한자배당표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에 첨가하여 그 나머지 상용한자 가운데 250자에서 300자 정도까지의 한자를 읽는 것.

②학년별 한자배당표의 한자 가운데 900자 정도의 한자를 쓸 수 있고, 글과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이렇게 소학교에서 학습한 1006자에 더하여 나머지 상용한자 939자 가운데 250자에서 300자 정도까지의 한자를 ‘읽을 수 있게’ 지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 「해설」에서는 “교과서를 읽는 것과 독서를 통하여 한자 읽기의 습속과 응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형과 음훈, 의미와 용법, 말의 기원, 속어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지도한다. 예컨대, 한자의 구성요소인 〈偏〉과 〈旁〉 등에 주목하여 읽기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역시 ‘읽는 한자’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그렇다면 한자를 쓰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①중학교에서 한자의 쓰기 지도는 소학교의 지도에 기초하여 6학년에 배당되어 있는 181자를 포함하여 1006자의 한자에 대하여 문장 중에서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소학교학년별 한자배당표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 가운데 900자 정도의 한자에 대하여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에 있어서는 寫體, 字形, 音訓, 의미나 용법 등의 지식을 습득시켜서 문맥에 맞게 한자를 쓸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수업이나 가정의 숙제에서는 한자에 능숙하도록 몇 번이고 반복연습을 시키는데, 실제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그러한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해설」에서는 “한자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쓰는 활동을 통하여 한자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와 관습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에 응하여 사전을 찾는 관습을 붙이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즉 한자교육에 관해서는 소학교 2학년부턴 ‘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한 신학습지도요령에 의해 대폭적으로 후퇴한 것이 된다. 마치 천년전에 일어났던 唐風文化에서 國風文化에로의 전환이 다

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음’에 의한 영어회화문화와 일본의 전통문화로 이후 21세기의 교육태세를 만들려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한자의 표의성’을 잘라버리고 있는 것이다.

5.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후의 한자교육

마지막으로 요번의 학습지도요령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편에 새롭게 추가된 「전통적인 언어문화와 국어의 특질에 관한 사항」과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관한 사항」의 「해설」을 인용해 보도록 하자.

①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계승되어온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친숙해지고,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육성하고, 국어가 담당하는 역할과 특질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고 언어감각을 양성하여 실제의 언어활동에서 유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언어문화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계승되어온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언어 그 자체, 즉 문화로서의 언어, 또는 그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어온 문화적인 언어생활, 나아가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각 시대에 걸쳐 표현하고 수용되어온 다양한 언어예술과 예능 등을 폭 넓게 지칭한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저학년부터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접촉하여 생애에 걸쳐 친숙하게 하는 태도의 육성을 중시하였다.

②저학년에서는 옛날이야기와 신화, 전승 등의 책과 문장을 읽어주거나 서로 발표하게 하며, 중학교에서는 쉬운 文語調의 短歌나 俳句에 대해 정경을 떠올리거나 리듬을 느끼면서 음독과 암송을 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속담이나 관용구, 故事成語 등의 의미를 알고 사용할 것. 고학년에서는 친숙해지기 쉬운 고문이나 한문, 근대 이후의 문어조의 문장에 대하여 대체적인 내용을 알고, 음독 할 것과 고전을 해설한 문장을 읽고 옛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아는 것을 중시하였다. (학습지도요령, 각학년에서의 전통적인 언어문화 관한 배당사항)

이리하여 현대 일본의 한자, 한문교육은 대폭적으로 후퇴하였다. 올해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주최의 「讀賣教育大賞」의 국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는 사이타마현(埼玉縣) 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매일 아침 15분간의 약식 홈룸에서 40년 동안 한문의 素讀을 실천한 것이 평가된 것이었다. 해석도 감상도 설명도 없이, 오로지 교사가 읽어주는 한문을 똑같이 발음하고 앵무새처럼 흉내를 내는 素讀을 몇 십년간 실천한 결과였다. 「개정학습지도요령」의 시행을 선취한듯한 교육이 평가된 것이었다.